#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48

발의연월일 : 2020. 12. 15.

발 의 자: 윤재갑・이광재・강병원

문진석 · 김윤덕 · 신정훈

홍문표 • 이개호 • 전용기

위성곤 의원(10인)

### 제안이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등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산지관리법상 인·허가 업무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토석채취허가지 내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외부토석을 반입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허가기준이 개정되었으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규정이 없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토석을 반입한 경우에 대한 행 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 5).
- 나. 외부 토석 반입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함(안 제31조제1항제4호).
- 다. 외부 토석 반입 관련 벌칙 기준을 정비함(안 제54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의 제목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산지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을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으로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신청·신고 등을 하 게 하거나, 신청·신고 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채취"를 "채취하거나 반입"으로 한다.

제54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8조제 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을 반입한 자
-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을 반입한 자
- 8.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 기간동안 제28 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을 반입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2 %	/॥ '중 단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
<u>축 및 운영)</u> ① (생 략)	<u>축·운영 및 이용)</u>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산지
<u> </u>	일시사용·토석채취 및 산지복
	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
	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
	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③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통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신청ㆍ
	신고 등을 하게 하거나, 신청・
	신고 등의 승인·허가·수리 등
	에 대한 교부·통지 등의 업무
	를 처리할 수 있다.
<u>②</u>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u>산</u>	<u>④</u> <u>산</u>
지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	지관리정보체계 및 제2항에 따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효율적

산지전문기관에 산지관리정보 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기 ①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 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 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u>채취</u>한 경우
- 5. ~ 8. (생략)
- ② (생략)

제54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기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채취하거
나 반입
5.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u>5.</u> (생 략) <신 설>

 _
 -
 _
 _
 -
 -
 _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 른 토석을 반입한 자
-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하지 하니하고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을 반입한 자
- <u>7.</u> (현행 제5호와 같음)
- 8.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 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 기 간동안 제28조제1항제6호 단 서에 따른 토석을 반입한 자